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성주1·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괄 : 1실, 12과,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3담당

→ 2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0읍면, 116담당

나. 한시기구 신설 : 1단 3담당

○ 신설 기구명 : **산업단지개발추진단**

○ 존속기한 : 2016년 2월 29일까지

다. 과 명칭변경(5)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실

○ 새마을개발과 → 새마을청소년과

○ 지역경제과 → 경제교통과

○ 도시행정과 → 도시건축과

○ 건설안전과 → 건설방재과

라. 담당업무 조정

○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담당업무전반 → 새마을청소년과

○ 읍면 건축업무 일부 → 도시건축과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업무 전반, 기업지원담당업무 전반, 공단조성관련 업무 → 산업단지개발추진단

○ 건설안전과 민방위관련 업무 → 총무과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업무 전반 → 새마을청소년과

○ 새마을개발과 식품위생담당업무 전반 → 경제교통과

○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업무 전반 → 경제교통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721,260천원

○ 일반직 : 60,582천원 × 10명 = 605,820천원

○ 복지직 : 30,000천원 × 2명 = 60,000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3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

○ 기능직

・기능9급→기능8급 : (2,360-1,908)×12월×5명 = 27,120천원

・기능9급→기능7급 : (2,844-1,908)×12월×1명 = 11,232천원

・기능9급→기능6급 : (3,332-1,908)×12월×1명 = 17,088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3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개정조례안 : 별첨

(3) 입법예고(2013. 2. 16 ~ 2013. 2. 20) : 의견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여 부	비 고 (입법예고명)
기획감사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반영() 미반영(√)**	
	○ 주민의 전체적 인권개선, 옹호, 신장, 침해 행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감사담당부서에 분장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조사, 신고자 보호 등 특정사안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성격이 다름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도청의 업무편제에 준하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경북도 12개 군 가운데 감사 5, 행정6, 미결정 1	○ 인권 또는 평등권침해 등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통해 구제, 개선 권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업무 성격상 조직내부에 대한 감사·조사를 통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를 제2조(실장·과장·단장·소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실장·과장·소장”을 “실장·과장·단장·소장”으로 하며,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를 제3조(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 “새마을개발과”를 “새마을청소년과”,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 “도시행정과”를 “도시건축과”, “건설안전과”를 “건설방재과”로 하고,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을 신설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1항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에 “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제4조(분장사무)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하고, 분장사무 중 “25”호 내지 “29”호를 삭제하며, “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그 밖의 주민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 제3항 총무과의 분장 사무에 “10”호 내지 “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10.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1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분장사무 중 “10”호 내지 “25”호를 “13”호 내지 “28”호로 한다.

제4조(분장사무) 제9항의 “새마을개발과”를 “새마을청소년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26”호 내지 “35”호를 각각 삭제하며, “36”호 내지 “44”호를 “26”호 내지 “34”호로 하며, “35”호 내지 “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3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3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3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3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3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사업
4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여성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 제10항의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3”호를 삭제하고, “4”호 내지 “6”호를 “3”호 내지 “5”호로 하며, “7”호를 삭제하고, “8”호 내지 “17”호를 “6”호 내지 “15”호로 한다.
그리고, “18”호 내지 “34”호를 각각 삭제 하고, “35”호 내지 “40”호를 “16”호 내지 “21”호로 하며, “22”호 내지 “3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 한다.
22.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23.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24.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25. 자동차보험업무
26.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7.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8.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9.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30.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32.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33.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4.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5.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6.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4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 그 밖의 지역경제, 교통, 식품・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 제11항의 “도시행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14”호 내지 “18”호를 각각 삭제하고, “19”호 내지 “26”호를 “14”호 내지 “21”호로 하며,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2.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4조(분장사무) 제13항의 “건설안전과”를 “건설방재과”로 하고, 분장사무 중 “31”호 내지 “33”호를 각각 삭제하고, “34”호를 “31”호로 하며, “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2. 그 밖의 건설방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장사무)에 “14항” 및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조성·분양
6.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7.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8.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9.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0.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1.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12. 기업용지 확보
13.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14. 공산품 품질관리
15.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7. 공장등록관리
18.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19.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0. 그 밖의 산업단지개발에 관한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추진단은 2016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통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성주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③「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재난민방위담당”을 “건설안전담당”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 제3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제5항 중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을 “건설방재과 건설안전담당”으로 한다.

④「성주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4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농업기반담당”을 “농촌개발담당”으로 한다.

⑤「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상수도담당”을 “수도행정담당”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조(실장·과장·단장·소장의 직급 등) ① …… 실장·과장·단장·소장 등 …… 실·과·단·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실·과의 설치)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과, 도시행정과, 산림과, 건설안전과를 둔다.	제3조(실·과·단의 설치)군의 …… ……주민복지실, ……새마을청소년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산업단지개발추진단(한시기구)…….
제4조(분장사무) ①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4.(생략) <신 설>	제4조(분장사무) ① (현행과 같음) 1.~24.(현행과 같음) 2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
②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4.(생략) 25.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26.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27.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28.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29.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수립·시행 30.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② 주민복지실의 ……. 1.~24.(현행과 같음)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25. 그 밖의 주민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③ 총무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9.(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9.(현행과 같음) 10.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11.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12.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18. (생략) 19. (생략) 20. (생략)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17.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20. (현행과 같음) 21.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26. (현행과 같음) 27.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⑨ 새마을개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5.(생략) 26.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7.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8.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29.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0.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31.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32.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3.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4.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5.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6. (생략) 37. (생략) 38. (생략) 39. (생략) 40. (생략) 41. (생략) 42. (생략) 43. (생략) 4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새마을청소년과……. 1.~25. (현행과 같음)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26. (현행과 같음) 27. (현행과 같음) 28. (현행과 같음) 29. (현행과 같음) 30. (현행과 같음) 31. (현행과 같음) 32. (현행과 같음) 33.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35. 저소득·결손가정 아동 보호 36. 여성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사업 37.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 및 지원 38. 저소득 아동 보육료지원 등 보육대책 수립·시행 39.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45.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위생,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사업 4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42. 그 밖의 새마을개발 및 정보통신, 여성아동,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공산품 품질관리 4.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5.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6. 가스안전관리 7.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8.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9. 실업대책 업무 10.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11.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12.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3. 방문판매업 관리 14. 통신판매업 관리 15. 승강기 관리 16.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7.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8.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9. 공장등록관리 20.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2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3.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24.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25.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26. 산업단지 조성·분양 27.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28.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29.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30.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1.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2.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33. 기업용지 확보 34.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35.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⑩ 경제교통과…… …….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업무 4. 담배소매업에 관한 업무 5. 가스안전관리 7. (삭제) 6. 노동·노정 및 근로업무 7. 실업대책 업무 8.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업무 9. 민간 건축부분 전기감리자 지정 및 관리 10. 성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 11. 방문판매업 관리 12. 통신판매업 관리 13. 승강기 관리 14. 계량기 및 주유기 관리 15. 주유소 및 유사석유류 관리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16. 직업소개소 및 취업알선사업

현 행	개 정 안
36.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37. 공공근로사업 38. 일자리 창출 39.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40.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1. 그 밖의 지역경제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 및 중소기업 인턴 관리 18. 공공근로사업 19. 일자리 창출 20.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2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무 22.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23.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24.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25. 자동차보험업무 26.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7.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28.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9. 위생업소 종업원 관리 30.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31.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관리 32.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33. 식품(공중)위생업소 교육 및 홍보 34.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35.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지도관리 36. 이·미용 및 조리사 면허관리 37. 그 밖의 지역경제, 교통, 식품·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⑪ 도시행정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13. (생략) 14. 여객·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15. 자동차 등록·말소 등 관리업무 16. 법령위반차량 행정처분 17. 자동차보험업무 18.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19. 창고업에 관한 업무 20.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21. 주거환경 개선사업 22.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23.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24. 무허가 건축물 단속 25.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6. 건축물대장 관리 <신 설>	⑪ 도시건축과…… ……. 1.~13. (현행과 같음)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4. 창고업에 관한 업무 15. 건축허가 및 승인 업무 16. 주거환경 개선사업 17.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8. 주택조합 인가 및 관리 19. 무허가 건축물 단속 20.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21. 건축물대장 관리 22.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 행	개 정 안
⑬ 건설안전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30. (생략) 31. 민방위, 민방공 계획 수립 32.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 3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34. 4대강 살리기 사업 35. 그 밖의 건설안전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⑬ 건설방재과 …… ……. 1.~30. (현행과 같음)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1. 4대강 살리기 사업 32. 그 밖의 건설방재관리 업무에 관한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⑭ 산업단지개발추진단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조성·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종합기획·조정 3. 기업유치 프로젝트 개발 4. 투자유치관련 기금 및 보조금 관리 5. 산업단지 조성·분양 6.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 7. 산업단지입주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8.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이관 9. 기업투자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0. 국내 수도권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1. 경영수익 및 민관공동투자유치사업 관리 12. 기업용지 확보 13. 외국인.법인 투자관리 14. 공산품 품질관리 15.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16.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17. 공장등록관리 18. 수출 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업무 19. 중소기업(창업설립 승인업체) 육성지도 20. 그 밖의 산업단지개발에 관한사항